# 플러스박스

## 요약 상품설명서

2024.11.08.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-2221 (유효기간: 2026.11.25.)

-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및 케이뱅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상품과 관련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케이뱅크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고, 향후 상품을 이해 했다고 서명하신 이후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#### ● 기본 정보

(조회기준일: 2025.04.08. 현재, 세전, 연 %)

상품특징	용도에 따라 만들어 쓰는 나만의 파킹통장				
예금종류	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				
예금과목	저축예금				
가입대상	당행 입출금통장을 보유한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(1 인 최대 10 계좌)				
가입기간	제한없음				
가입금액	제한없음				
적용금리	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해 약정된 금액 구간별 금리 차등 적용				
	금액구간	5 천만원 이하	5 천만원 초과분		
	금리	연 2.00%	연 2.50%		
	※ 신규일 당시 케이뱅크 홈페이지 및 케이뱅크 앱에 고시된 금액구간 및 금리를 적용하며, 금액구간 및 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금액구간 및 금리를 적용합니다.				
예금자보호	0	원금과 이자 포함 5 천	만원까지 가능		
이자지급방법	■ 이자계산기간동안 일자별 최종 잔액에 대해 약정된 금액 구간별 금리를 차등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이 예금에 지급합니다.				
	- 이자계산기간: 최초 예금일(또는 지난 이자지급일)로부터 다음 이자지급일(또는 해지일) 전일 - 이자지급일: 매월 넷째 주 토요일				
	- 일별이자: 금액 구간에 해당하는 매일의 최종잔액 X 금액 구간별 금리 / 365				
	■「바로 이자받기」 이용 시 이자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최초 예금일(또는 지난 이자지급일)부터「바로 이자받기」신청 전일까지의 이자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.				
	■ 연결계좌를 통한 입출금만 가능하며, 그 외의 입출금은 모두 제한됩니다.				
거래방법	■ 케이뱅크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출금계좌로 지정된 본인 명의 타행 계좌에서 연결계좌를 거쳐 이 예금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.(단, 부가서비스인 기분통장은 연결계좌를 통한 입출금만 가능합니다)				
	■ 급여이체, 카드결제, 공과금 결제 등 결제성 계좌이체 등록이 불가하며, 현금 출금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				

※ 본 상품은 케이뱅크 수신팀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.

## 플러스박스

## 상품설명서

2024.11.08.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-2221 (유효기간: 2026.11.25.)



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 인당 "5 천만원까지" 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

-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케이뱅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상품과 관련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케이뱅크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고, 향후 설명을 이해했다고 서명하신 이후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「플러스박스 특약」,「예금거래기본약관」,「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」 및 거래별 개별약관이 적용됩니다.

### ■ 상품 개요

상품명: 플러스박스

상품특징: 용도에 따라 만들어 쓰는 나만의 파킹통장

#### ■ 거래 조건

(조회기준일: 2025.04.08. 현재, 세전, 연 %)

구 분	내 용
가입대상	■ 당행 입출금통장을 보유한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(1 인 최대 10 계좌)
예금종류	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
예금과목	■ 저축예금
가입기간	■ 제한없음

가입금액	■ 제한없음			
	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해 약정된 금액 구간별 금리 차등 적용			
	금액구간	5 천만원 이하	5 천만원 초과분	
적용금리	<b>금리</b> ※ 신규의 당시 케이뱅크	<b>연 2.00%</b> . 홈페이지 및 케이뱅크 앱에 고시	<b>연 2.50%</b> 되 금액구가 및 금리를 적용하며	
	금액구간 및 금리가 변	년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변경	된 금액구간 및 금리를 적용합니다. 금액 구간별 금리를 차등 적용한	
이자지급 방법	일별이자를 합산하여 ( - 이자계산기간: 초 전일 - 이자지급일: 매월 - 일별이자: 금액 -	이 예금에 지급합니다.  초 예금일(또는 지난 이자지급일)로   넷째 주 토요일 P간에 해당하는 매일의 최종잔액 X	로부터 다음 이자지급일(또는 해지일) ( 금액 구간별 금리 / 365 전이라도 최초 예금일(또는 지난	
자동이체 설정	<ul> <li>● 연결계좌에서 플러스박스 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, 플러스박스 화면에서만 등록/해지가 가능합니다.</li> <li>● 자동이체는 일, 주, 월 단위로 최소 1 원에서 최대 10 억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</li> <li>●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신청일 다음날 기준으로 시작되며, 해지는 즉시 적용됩니다.</li> </ul>			
거래방법	<ul> <li>● 연결계좌를 통한 입출금만 가능하며, 그 외의 입출금은 모두 제한됩니다.</li> <li>● 케이뱅크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출금계좌로 지정된 본인 명의 타행 계좌에서 연결계좌를 거쳐 이 예금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. (단, 부가서비스인 기분통장은 연결계좌를 통한 입출금만 가능합니다)</li> <li>● 급여이체, 카드결제, 공과금 결제 등 결제성 계좌이체 등록이 불가하며, 현금 출금계좌로 사용할수 없습니다.</li> </ul>			
부가서비스	■ 기분통장: 감정이모지를 서비스	를 선택하여 입금하고, 기분내역 조	도회 및 기분카드를 공유할 수 있는	
계약의 해지	■ 케이뱅크 앱을 통해 해	지		
연계•제휴 서비스 제공	■ 해당 없음			

양도 및 상속	■ 이 예금의 양도는 불가합니다. ■ 이 예금은 상속 시 명의변경이 불가하며, 해지만 가능합니다.
세제혜택	■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
휴면예금	■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 년 이상 경과한 예금은 『예금거래기본약관』에 따라 휴면예금이 되어 서민금융진흥원(국번없이 1397)에 출연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휴면예금은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(www.sleepmoney.or.kr)를 통해 조회가능 합니다.
지급제한	<ul> <li>■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예금의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</li> <li>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■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, 출금, 이체 등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.</li> <li>■ 통장이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, 송금지연,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
자료열람 요구권	<ul> <li>■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•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위탁에 관한 자료</li> <li>■ 은행은 법령, 제 3 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
위법계약 해지권	<ul> <li>■ 은행이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였거나,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 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(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.)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■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.</li> </ul>
유의사항	■ 이 예금의 해지 시 원금 및 이자는 연결계좌로 이체 처리됩니다. ■ 계좌이동서비스, 계좌통합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본 상품은 케이뱅크 수신팀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.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케이뱅크 고객센터(1522-1000) 및 인터넷 홈페이지(www.kbanknow.com), 모바일 앱 중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 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

하되, 기한 연장 시 이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**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https://www.fcsc.kr)**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고객정보가 변경될 경우, 케이뱅크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■ [부록]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용어	설명
압류	■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
가압류	■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
질권설정	■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·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
출연	■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 ■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
경과기간	■ 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※ 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